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6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천하람・이준석・이주영

정성호・황운하・김병기

김영배 · 주철현 · 이인선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 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이하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감사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과정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신 설></u>	제4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
	게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이하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감사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징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반은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 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과징 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 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 다.